

콜마홀딩스(주) 내부거래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주식회사 콜마홀딩스(이하 “회사”라 한다)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 등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관 제37조의2 제1항 제4호에 의거 관계사간 내부거래를 점검하는 내부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 운영 및 권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구성

제3조 (구성 및 임기)

- ① 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3분의 2인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만료·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한다.
다만, 신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신규이사를 선임하고, 이어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신규 위원을 선임한다.
- ⑤ 결원으로 총원된 위원의 임기는 기존위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제4조 (위원장)

- ①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선임한다. 단, 위원장은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 ③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이에 임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관리한다.

제3장 운영

제6조 (종류)

-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
- ② 정기위원회는 매 반기별 1회씩 개최한다. 단, 필요 시 위원장이 변경할 수 있다.
- ③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소집권자)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의장직무 대행이 직무를 수행한다.
-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문서, 모사전송기(FAX), 유선 등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의결사항)

- ① 콜마홀딩스와 관계회사간 사채 발행, 유상 증자, 주식 취득 등의 유가증권 거래
- ② 콜마홀딩스와 관계회사간 중요한 차입, 보증 및 담보제공(건당 100억원 이상) 거래
- ③ 콜마홀딩스와 관계회사간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연결 자기자본의 5% 이상의 투자)
- ④ 콜마홀딩스와 관계회사간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⑤ 콜마홀딩스와 관계회사간 「상법」 의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승인 대상 해당 및 이해상충 우려 거래 限)
- ⑥ 콜마홀딩스와 관계회사간 「공정거래법」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건당 100억원 이상)
(단, 상품 · 용역 거래의 경우 분기별 합산 금액을 의미하며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세부 항목은 [별첨 1] 참고)
- ⑦ 「내부거래 관리 규정」 등 ‘내부거래’ 관련 규정의 제·개정
- ⑧ 상기에 열거되지 않았으나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또는 및 사업적 측면에서 ‘내부거래 위원회’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중요한 거래

제10조(보고사항)

- ① ‘내부거래’ 전담 부서의 검토 현황(콜마홀딩스 및 관계회사 또는 관계회사간) 및 주요 업무 실적
- ② 기타 업무 수행 중 이사회 보고가 필요할 것으로 인정되는 주요 업무 사항

제11조 (의안제출)

- ① 위원회 상정 의안과 그 이유는 각 해당부서에서 작성하여 1주일전 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간사는 전항의 접수 의안에 대한 문안 검토를 거쳐 이를 위원회에 부의한다.

제12조 (결의방법)

-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②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관련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 성립을 위한 정족수 (의사정족수)의 계산에는 포함되나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의결정족수)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 ③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와 같이 이사회 특별 결의요건(이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을 요하는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진행한 후 이사회를 통하여 결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장 권한 및 의무

제13조 (권한)

- ①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금지) 및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계회사간 발생하는 내부거래 및 거래 성격에 따라 별도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부거래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언제든지 내부거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의 주요 내용, 계약방식 및 거래 상대방 선정기준, 세부거래 조건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사와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고 받을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되는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시정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 (의무)

- ① 위원회의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내부거래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사항

제15조 (통지의무)

-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통지를 받은 각 이사는 위원회의 결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된 이사회에서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16조 (의사록 작성)

-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7조 (경비)

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

제18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공정거래법」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대상

번호	항목
1	계열금융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한 단기금융상품 거래의 분기별 공시
2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의 상품·용역거래
3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거래 변경
4	특수관계인과의 보험거래
5	특수관계인과의 리스거래
6	특수관계인과의 수익증권거래
7	특수관계인과의 예·적금거래
8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9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의결
10	특수관계인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의결
11	특수관계인에 대한 교환사채 발행 의결
12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모사채 발행 의결
13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술제휴
14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술이전
1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술이전
1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증
17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
18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차입
19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20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변제
2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
2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무인수
23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인계
24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매도
2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매수
2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
2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임차
28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 유가증권 매도
2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 매수
30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양도

번호	항목
3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양수
32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33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
34	특수관계인에 대한 담보제공
3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담보
36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대여
37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차입
38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의 처분
39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의 취득
40	특수관계인에 대한 CP 매도
4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CP 매수
42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매도
4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채권매수
44	특수관계인에 대한 영업양도
45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양수